방송통신위원회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2010. 6. 10.(목)

보도자료

2010년 6월 10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가.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 과장(2770) 나. 정책총괄과 이승원 팀장(2170)

[보고안건]
가.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 과장(2770) 나.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광혁 과장(1650)

2010년 제34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오전회의에는 **의결안건 2건, 보고안건 2건**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(안)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o 위치기반서비스(LBS) 시장을 활성화시키고,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도를 높이며, 합리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, 「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(안)」을 심의하여 의결함

나. 2010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에 관한 건

o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, 영어FM 라디오방송 지원,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사업의 증액 요구에 따른 '10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을 심의하여 의결함

< '1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구 개요 > 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'10년계획	증액요구	사업내용
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	20,139	**3,700**	EBS 수능방송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스토리지 임대 및 회선 사용료 지원
영어FM 라디오방송 지원	2,269	**340**	광주 영어FM을 여수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송보조국 설치
언론중재위원회 지원	7,963	**1,433**	언론중재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,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지원
합 계	**30,371**	**5,473**	-

[보고안건]

가.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(첨부 참조)

o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·신고 제도, 보호조치 조항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,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규정(안)을 마련하여 보고함

나. 방송·통신·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(안)에 관한 사항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o 무선인터넷 기반 융합서비스의 등장 등 방송·통신·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제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(총 18건)을 마련하여 보고함

※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오후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할 예정입니다.

[첨부]

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」 개정(안)

1. 추진배경

○ **위치정보 관련 규제를 개선**함으로써 **국내 LBS 시장 활성화를 도모**

2. 주요 개정 사항

○ **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**에 대하여 **허가·신고 의무를 면제**하며 **보호조치 의무 완화**

○ **위치정보를 중개하는 사업이 가능**하도록 개정

※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를 他위치기반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

○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,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**"매회 즉시 통보"하도록 하는 규정 완화**

※ 적용 예 :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즉시 통보 대상에서 제외 등

○ LBS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**공정경쟁 관련 규정 신설**

※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·중단·제한할 수 없음
※ 위치정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·운영 등

○ 경미한 위반에 대한 **벌칙규정 완화**하고, **방통위가 시정명령**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 등

○ **(기타)** 사업휴지 기간 연장(6월 → 1년), 양벌규정에 대한 완화 등

※ 사업 양수 및 합병 신고기한을 양수 및 합병 30일 이내로 규정

3. 향후 일정

○ 부처협의, 규개위·법제처 심사, 차관·국무회의 : ~ '10. 11월